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1.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란?

-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기기 및 인체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 기자재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전파법 제58조의2)

2.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전파법 제58조의3,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

구분	적용대상	대상기자재의 예
적합 인증	전파 혼·간섭 위해,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유해한 영향을 주거나 통신망의 안전 및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방송통신기자재	스마트폰, 선박국유레이다, 통합공공망 및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등
적합 등록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 혼·간섭, 전자파의 위해 영향이 적은 방송통신기자재	컴퓨터, 모니터, 전기세탁기, 전동공구, 블루투스스피커, 전동스쿠터, 조명기기 등
	<자기시험 적합등록> 사용범위가 한정되고,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측정·검사용 및 산업·과학용 방송통신기자재	스펙트럼 분석기, 산업용 컴퓨터 등
잠정 인증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방송통신기자재 *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 90일 이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함	적합성평가기준이 없는 신제품

※ 불법기자재로 자주 적발되는 제품: 스마트폰, 태블릿 PC, 블루투스 이어폰, 전기장난감 등

3.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전파법 제58조의3, 동법 시행령 제77조의7 및 별표 6의2)

- 산업표준화법, 자동차관리법, 의료기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 시험·연구, 홍보, 기술개발, 전시, 대회참가, 개인사용 등 사용 목적이 한정되는 방송통신기자재
-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고 수출 전용으로 제조하는 방송통신기자재

4. 적합성평가 처리절차



5.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의 표시

-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
-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출고 전에 하고, 수입제품의 적합성평가 표시는 통관 전에 하여야 함



※ 식별부호 : R-C-XXX-XXXX(적합인증·적합등록·잠정인증), R-CS-XXX-XXXX(동일기자재)

6. 위반시 처벌규정

위반 내용	처벌 내용	관련 법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4조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파법 제86조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 게시 포함)·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파법 제90조

<KC 전파인증 담당별 연락처>

- ▶ 적합성평가 제도 :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061-338-4711~4715)
- ▶ 적합인증·등록·변경·면제 :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031-644-7531~7538)
- ▶ 적합성평가기자재 사후관리 : 전파시험인증센터 사후관리과(031-644-7471~7474)
- ▶ 미인증기자재 조사·단속 :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 또는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02-2680-1842)

서울 전 파 관 리 소 장